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촌지역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

지구가 대표적이다. 주민이 모여 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유해 시설을 정비하며 복지, 문화, 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산업시설, 에너지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산업연계성을 높이고 농촌 경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를 도입**한다. 그 밖에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농업유산 등 농촌 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도 포함**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②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된다.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체계가 도입된다.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기본방침이다.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은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시·군은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 국가·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농촌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그 지정 및 해제를 결정

③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 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군의 시행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시·군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 내용과 비율** 등을 약속한다. 2031년까지 400개 생활권역별로 ①농촌공간정비, ②주거·정주여건, ③일자리·경제, ④사회·생활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재생 지원하는 농촌재생프로젝트 이행을 목표로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농촌지역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시행계획의 성과 창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공간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광역·기초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공간 중앙·광역·기초지원기관의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의 첫걸음이 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난개발,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의 재생이 필요하다.”라며, “농촌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2. 농촌특화지구 개요
3. 농촌협약제도 개요



붙임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① 계획 수립 사전단계

- (기초조사)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기초조사 실시(제6조)
 - *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 (의견청취) **기본·시행 계획** 수립 시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제8조)
- (주민제안) 지역 주민은 지자체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가능(제15조)

② 중장기 계획 수립

- (기본방침) 농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제6조)
 - 국가차원에서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 (기본계획)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 시 5년마다 정비, **광역심의회 심의 및 시·도지사 승인**(제7, 9조)
 - 시·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방향을 설정하는 장기 전략계획**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및 방향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지원기관 지정 등
- (시행계획)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광역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승인**(제10-11조)
 - 시·군이 **생활권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사업 세부 실행계획**
 - *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단위 세부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타 기관 연계사업, 사업지원 기대효과 등

③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 (정의) 위해시설 이전, 일자리·경제기반 구축,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회 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2조)
- (사업계획·시행)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승인**으로 사업 시행(제27-28조)

- (사업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원(제42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

④ 농촌특화지구 도입과 주민협정

- 주민제안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 특화지구 지정 가능(제12-14조)
 - (종류)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제12조)
 - (운영) 국토계획법 상의 유사한 용도지구를 의제*하여 건축물 설립 및 행위 제한을 적용(제14조)
- *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지역민은 농촌 특화지구 설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 체결 가능(제22조)

⑤ 농촌협약

- (협약 신청)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통합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을 신청(제17조)
- (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제16조)

⑥ 추진 체계

- (심의회)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해 농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심의회를, 시·도 및 시·군에 광역·기초정책심의회 설치(제32, 33조)
 - * 중앙위(기본방침 수립, 실적평가), 광역위(기본계획, 시행계획 심의)
- (지원조직) 농식품부 및 시·군 지자체 소속으로 농촌공간 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설치(제34조)
- (지원기관) 농촌공간정책의 지원기관으로 농식품부 장관은 중앙지원기관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광역·기초지원기관을 지정(제35조)
 - * 현황 조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사업 평가, 주민협정 지원, 현장 전문가 육성

붙임2

농촌특화지구 개요

-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보호 등을 위해 농촌 특화지구 지정
- 주민제안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 특화지구 지정 가능(제12-14조)
 - (종류)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 (운영) 국토계획법 상의 유사한 용도지구를 의제하여 건축물 설립 및 행위 제한을 적용(제14조)
- * 의제 대상 :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지역민은 농촌 특화지구 설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 체결 가능(제22조)

<농촌 특화지구 종류>

구분	주요내용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마을 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촌 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 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경관농업지구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해 농촌관광 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구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개념) '20년부터 지방분권(지방이양)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시행

* 행정구역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간적 범위

※ 지원사업 예 :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공간정비(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선정체결 현황 : ('20선정'21체결) 12개 → ('21선정'22체결) 20개 → ('22선정'23체결예정) 21개

<농촌협약 선정 시·군 현황>

선정시기	경기(3)	강원(4)	충북(6)	충남(7)	전북(7)	전남(9)	경북(9)	경남(8)
'20	이천	원주, 영월	영동, 괴산	홍성	임실, 순창	보성	상주	김해, 밀양
'21	안성	평창	제천, 음성	금산, 청양	김제, 진안, 무주	나주, 화순, 장흥, 강진	군위, 청도, 고령, 봉화	고성, 산청, 합천
'22	여주	양양	청주, 진천	아산, 서산, 부여, 예산	군산, 익산	순천, 구례, 해남, 함평	영주, 칠곡,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거창

- (참여조건) ①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②농촌협약 추진체계** 구성·운영, ③지방이양된 사업(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

* 전략계획 수립 시 주요 분야 : 일자리·경제기반 구축,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사회 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농촌다움(농촌환경, 농업유산, 생태·경관 등) 보전 등

** 전담조직(시·군 전담부서), 농촌협약 위원회,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

- (협약주체)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

- (협약기간) 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 (협약규모) 개소당 국비(대상사업) 기준 최대 300억원+α(농촌공간정비사업)

* 지방비는 지원 사업별 매칭 비율(30~50%)에 따라 지자체에서 확보, 협약서에 포함

⊕ 타 부처 사업, 농식품 분야 외 지자체 사업 등은 추가 확보(지자체) 시(활성화계획 포함) 연계사업으로 분류, 협약서에 포함